남양주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영실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4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21.

발의의원 : 김영실, 이영환, 박경원, 전혜연, 최정혜, 김수연, 김기준, 원주영, 이진환, 임영신, 백선아, 김도은, 정미정

1. 제안 이유

도로점용공사장의 보행안전통로 및 야간 안전시설 관리기준을 구체화하고,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안전을 강화하는 한편, 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절차와 현장점검 및 안전조치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불필요한 적용대상 규정 삭제(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)

나. 보행안전통로 확보, 야간 안전시설 설치·유지관리 및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 확보에 관한 사항 구체화(안 제4조제2항제7호)

다.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·조정 절차 명확화(안 제8조)

라. 교통소통대책 변경에 따른 안전시설 점검 및 공사시행자에 대한 보완조치 요청 근거 마련(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)

마. 시행규칙 관련 조항 삭제(안 제11조)

3. **개정조례안** : 덧붙임

4. **신·구조문 대비표** : 덧붙임

5. **예산수반사항** : 덧붙임

6. **관계법령 발췌서** : 덧붙임

남양주시 조례 제 호

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보행안전통로의 확보, 야간 조명시설 및 안전표시의 설치·유지관리,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 확보

제8조 중 “도로관리심의회를 할”을 “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·조정을 거칠”로 한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행안전통로 및 야간 안전시설 등의 설치·유지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시행자에게 안전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대상) ①·② (생 략)	제3조(적용대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 중 “보도를 점용”이란 해당 보도를 일부 점용 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「도로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	<삭 제>
④ 제1항 중 “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”이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 또는 보도 점용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, 이 경우 차로 또는 보도를 하루에 4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.	<삭 제>
제4조(교통소통대책의 수립·제출 등) ① (생 략)	제4조(교통소통대책의 수립·제출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	7. 보행안전통로의 확보, 야간

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	조명시설 및 안전표시의 설치·유지관리,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 확보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
제8조(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)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「도로법」 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를 할 수 있다.	제8조(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·조정을 거칠 ----------.
제9조(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) (생 략)	제9조(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 설>	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행안전통로 및 야간 안전시설 등의 설치·유지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.
<신 설>	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시행자에게 안전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삭 제>

붙 임 **예산수반사항**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○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

나. 재정 수반 요인

○ 해당 없음

2. 미 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비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.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.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 첨부 사유

본 조례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사항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.

- 본 조례는 도로점용공사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통행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 필요시 점용 공사장 보행안전 유지 관리 보완 및 상태 점검, 도로관리심의회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예방사업의 종류, 방법, 규모, 사업범위 등을 현 시점에서 특정하기 어려움

4. 작성자

도로관리과장 윤정원

붙 임 관 련 법 령

도로법 시행령 [시행 2026. 9. 18.] [대통령령 제36587호, 2026. 8. 18., 타법개정]

제62조(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) ①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· 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(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. 이하 제63조에서 같다)에 도로관리심의회(이하 “관리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조정한다.

1.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· 조정
2.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
3.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 · 관리
4.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
5.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

제66조(소심의회) ① 관리심의회는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심의 · 조정할 안전대책소심의회와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기 등을 심의 · 조정할 중복굴착소심의회(이하 “소심의회”라 한다. 이하 같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소심의회의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겸하고, 소심의회의 위원은 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소심의회에는 제63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소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 · 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 ·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.